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본 고대사회 집단책임관습

A Study on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 From the View of Moral Adaptation -

안 성 조*

Ahn, Seong-Jo

목 차

- I. 머리말
- II. 사적 보복과 집단책임 관습의 시대와
문화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 III. 진화윤리학과 도덕적응설
- IV.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본 집단책임관습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911 테러 직후 미국의 형법학자 플레처가 집단책임이론을 주창한 데
이어 국내외에 집단 또는 단체책임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 수용하여 집단책임의 유래를 살펴보고 그 이성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진화심리학과 진화윤리학의 관점을 원용해 이를 토대로 고대사회의 집단책임
관습에 내재한 합리성을 논구해 보려는 시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불합리하다. 피

논문접수일 : 2014.11.18

심사완료일 : 2014.12.09

게재확정일 : 2014.12.11

* 법학박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고인에게 중대한 법의의 침해를 가져오는 형사책임을 집단의 연대성에 기초해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무고한 시민이 다른 사람의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감정에 반한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국가에 의한 공형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시절에 범죄자에 대한 유일한 응징수단으로 사적 보복이 허용되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집단책임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적응설의 이론들을 가져와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집단적 책임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측에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측도 집단적으로 죄를 추궁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즉, 집단책임을 인정할 경우 범죄억지력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고, 물질적으로든 위신과 명예의 여러 측면에서 피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며, 유전적 적응도 측면에서는 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도덕적응설의 입장에서 집단책임 관습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마련해 봄으로써, 그동안 단지 문헌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대 사회의 법문화에 내재한 합리적 이성을 추론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주제어 : 집단책임 관습, 사적 보복관습, 진화심리학, 진화윤리학, 도덕적응설, 진화된 심리적 기제

I. 머리말

형법상 책임은 개인책임이 원칙이다. 하지만 발생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그 행위자가 속한 친족이나 (혈연)집단에게까지

귀속시키는 집단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의 사고방식이 고대사회의 관습에 염연히 존재했고 이는 사적 보복(blood feud) 관습과 마찬가지로 고대 균동지역에서부터 유래한 듯 보인다.¹⁾ 여기서 '법리'나 '원칙'이 아닌 '관습'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사적 보복이 고대사회에서 사법 외적으로(extra-judicial) 인정된 관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키는 관습도 법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더 많이 인정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칙이라고 지칭하기에는 그 적용범위가 살인 등의 중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관습이 존재했던 문화권에 따라서 약간의 상위가 있지만 집단책임 관습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의적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갑이 을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 을의 '친족집단' 또는 '가장 가까운 부계친족 병'에게 갑에 대해 사적 보복(blood feud)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때 을의 '친족집단'이나 병은 원칙적으로 살인자 갑만을 살해할 수 있지만, 문화권에 따라서는 갑을 포함해 갑의 친족구성원까지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 유형의 집단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권에 따라서는 살인자에 대한 폐의 보복 이외에도 배상금(속죄금)을 청구하는 대안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이때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피해자의 친족들이었고,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加害자의 친족들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유형의 집단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집단책임의 사고방식이 발달했던 것일까? 이를 두고 단지 미개한 법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해,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도덕적응설은 진화심리학의 한 파생분야인 진화윤리학의 기본 입장이다. 고대 사회의 법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의 관점은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다. 더 이상의 문헌적 접근이 어려운 사회상에 대

1) 이 점에 대해서는 George P. Fletcher, *Romantics at War: Glory and Guilt in the Age of Terrorism*, Princeton Univ. Press, 2002, p.195.

해서도 진화론은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기초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고대사회의 집단책임의 인정은 사적 보복관습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²⁾ 사적 보복관습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에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과 함께 집단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는가를 시대별, 문화권에 따라서 살펴보고(II), 그 다음에는 진화윤리학과 도덕적응설의 입장이 무엇인지 검토하며(III), 이를 배경으로 집단책임의 관습이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가능을 했음을 논증할 것이며(IV), 그에 따른 고대사회 집단책임관습의 함의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V).

II. 사적 보복과 집단책임 관습의 시대와 문화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

1. 고대 근동의 사적 보복관습과 집단책임

기원전 18세기 전후 함무라비 법전³⁾의 제정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살인이나 가족이나 친족들에 의한 피의 보복(blood feud)에 의해 처리되는 관습이 지배했었다.⁴⁾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⁵⁾ 즉,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
- 2) 피의보복과 집단책임의 상관성을 잘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W. Den Boer, *Private Morality in Greece and Rome: Some Historical Aspects*, Brill Archive, 1979, p.9.
 - 3) 잘 알려 있다시피 동 법전은 현대와 같은 의미의 법전(codes)이 아니고 구두로 전승되고 관행화 되었던 법률을 기록한 법모음집(law collections)이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 4) 살인에 대한 사적 보복을 인정하는 관습 비단 근동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그리스와 게르만지역은 물론 중세의 스칸디나비아와 스위스 등에서도 사적 보복은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 Carl Ludwig von Bar, *A History of Continental Criminal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16, pp.4-6, 57-61, 119-121, 142-145.
 - 5) G.R. Driver & John C. Miles, *The Babylonian Laws Vol. I-Legal Commentary-*, Oxford: Clarendon Press, 1956, p.60.

히브리 법문화에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⁶⁾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론에서도 살인은 그 가족과 친족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적인 사건이라는 감정이 지배적이었고, 일반적으로 고의적 살인은 가족이나 친족들의 피의 보복에 의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처리되었다.⁷⁾ 함무라비 법전에는 과실 등에 의한 살인(manslaughter)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고의적 살인에 대한 조문이 없다. 그 이유는 고의적 살인은 과실 등에 의한 살인과는 달리 비사법적인 방식, 다시 말해 불문의 관습을 통해 처리되는 전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⁸⁾ 함무라비 법전은 고의적 살인과 기타 기타살인을 구분하여 전자는 사법외적인 불문의 관습에 의해 처리하고, 그리고 후자만을 법적 절차에 맡기는 이원적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⁹⁾

기원전 7세기 경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던 신아시리아(Neo-Assyria)의 경우에도 사적 보복관습이 존재했다. 다만 보복관습과 관련해 일정한 법적 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던바, 살인자가 거주하는 마을이 피해자의 친족들에 대한 배상에 집단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¹⁰⁾ ADD 618¹¹⁾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

6) C. Edwards, *The World's Earliest Laws*, London: Watts & Co., 1934, p.113: Edwin M. Good, "Capital Punishment and Its Alternatives in Ancient Near Eastern Law", *19 Stan. L. Rev.* 947 (1967), p.952.

7) Raymond Westbrook, "The Character of Ancient Near Eastern Law", in: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I, Leiden: Boston: Brill, 2003, pp. 78-79: G.R. Driver & John C. Miles, op.cit., p. 314.: C. Edwards, op.cit., p.113. 한편 고대 이스라엘법에서는 살인이 가족이나 친척 등의 피의 보복(blood-feud)에 의해 처리되었지만, 고대 근동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농경사회였던 아시리아와 같은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법절차를 통해 처리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절차의 종결단계에서 형벌의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에만 국한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Pamela Barmash, "Blood Feud and State Control: Differing Legal Institutions for the Remedy of Homicide during the Second and First Millennia B.C.E.", *63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83 (2004), pp.184-189.

8) G.R. Driver & John C. Miles, *The Assyrian Laws*, Oxford: Clarendon Press, 1935, p.33. 드라이버와 마일즈는 함무라비 법전과 중세 아시리아 법전(MAL)에 살인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없는 것은 살인이 셈족의 관습인 피의 보복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9) 단, 사망한 피해자 외국인이어서 피의 보복을 집행해 줄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 처형을 해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Raymond Westbrook, op.cit., p.78.

10) 이에 대해서는 Pamela Barmash, op.cit., pp.28-30, 57-62.

11) ADD 618은 "C.H.W. Johns, *Assyrian Deeds and Documents*: Volume 1, second edition,

족들에게는 배상¹²⁾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고, 살인자가 속한 마을의 주민들은 배상을 할 의무가 있었다. ADD 321¹³⁾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 측에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도착하면 협상이 개시되고, 양 당사자는 배상물의 종류¹⁴⁾와 양을 결정한다. 살인자는 만일 배상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사형에 처해졌다.¹⁵⁾ ADD 164도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체포된다 는 내용이며, 이처럼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형벌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MAL A10¹⁶⁾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ADD 806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거래가 관헌의 담당관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전거들을 종합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바, 살인자가 체포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살인자가 속한 사회집단(social group)과 담당관의 중재 하에 배상에 관해 협상할 수 있었고, 양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법관(crown official) 입회 하에 배상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집단적으로 배상책임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처럼 살인에 대한 책임을 살인자의 가족이나 친족이 집단적으로 져야하는

Cambridge: Deighton, Bell and Co., Ltd., 1924, number 618"을 뜻한다.

- 12) 이 경우의 배상금은 현대적 의미의 순수한 민사배상(pure indemnification)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절도에 대해 절취한 물건의 30배 또는 10배의 배상을 명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함무라비법전 제8조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대의 금전배상은 벌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피해자 측과의 화해를 위한 화해금 또는 속죄금(ergild)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Raymond Westbrook, "Studies in Biblical and Cuneiform Law", in: *Chiers de la Revue Biblique*, Paris: Gabalda, 1988, pp.44-45. 요컨대 고대 근동의 법제도에서 범죄에 대한 배상은 손해 배상책임과 벌금의 성격이 뒤섞인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3) ADD 321은 "C.H.W. Johns, Assyrian Deeds and Documents: Volume 1, number 321"을 뜻한다.
- 14) 관련 기록들에 의하면 배상의 방식은 돈은 물론, 양, 토지, 노예 등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 15) 바로 이 점에서 살인자의 운명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artha T. Roth, "Homicide in the Neo-Assyrian Period", 67 *American Journal of Oriental Series*, (1987), p.361.
- 16) 중세아시리아법(Middle Assyrian Laws) A10조.
- 17) Pamela Barmash, op.cit., pp.69-70면.

집단책임이란 법형상은 비단 고대 근동지역뿐만 아니라 피의 보복관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다만, 그 책임의 귀속범위는 절마다 상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살인자의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자 측에 살인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전거는 보이지 않는다.¹⁹⁾ 다만, 살인자가 속한 성읍의 장로들은 재판을 열어 그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고의적 살인으로 판명될 경우 그 살인자를 피해자 측에 보복을 받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을 뿐이다.²⁰⁾ 집단책임은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 예컨대 만일 살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살인자의 어느 특정한 가족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²¹⁾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이유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친족)집단도 책임을 겪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중세사회의 피의 보복 사례를 보면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한다.

2. 중세 유럽의 보복관습과 집단책임

18) 이에 대해서는 Richard R. Cherry, "Primitive Criminal Law", in: *Primitive and Ancient Legal Institution, Evolution of Law Series Vol.II*,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15, pp.138-140; Carl Ludwig von Bar, op.cit., pp.4-5.

19)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은 신성하고 자연적인 질서(sacred, natural order)에 대한 침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성서에 의하면 살인자는 피해자가 흘린 피가 지닌 생명력을 지배(control over the blood-the life force-of the victim)할 수 있다고 여겨졌고, 따라서 이러한 생명력에 대한 지배권을 모든 생명력의 원천인 신에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살인자를 처형함으로써 그의 신성모독(desecration) 행위를 중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성모독 행위에 대한 속죄방법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었다. George P. Fletcher, *Rethinking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236. 플레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종교적 관념 때문에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생명은 그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승낙에 의한 살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역시 유사한 설명방식으로는 Pamela Barmash, op.cit., at 94-115. 바마쉬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서 살해를 당한 무고한 사람의 피는 살인이 발생한 지역(land)을 오염시키기(pollute) 때문에 이를 정화하기(purify) 위해 살인자의 피, 즉 처형이 요구되었다고 한다. 살인에 대해서는 오염과 정화라는 종교적 관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20) Pamela Barmash, op.cit., 89-90면.

21) 이 점에 대해서는 Richard R. Cherry, op.cit., p.138-140.

중세유럽도 사적 보복이 허용되던 사회였다.²²⁾ 특히 살인은 피해자 가족집단이 개입하게 되는 '피의 보복(feud)'을 불러왔는데, 이 용어는 친족에 의한 보복을 뜻하는 고르만어 'faida'에서 유래한다. 피의 보복은 단지 가해자 개인에게만 가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보복을 당하는 가해자 집단의 연대성도 보복을 가하는 피해자 집단의 연대성만큼 똑같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살인자의 본인의 죽음 이외에 또 한 명의 그의 혈족 구성원의 죽음까지 요구되기도 하였다. 마크 블로흐(Marc Bloch)에 의하면 바로 이 점이 중세 유럽사회에서 집단적 책임이 인정된 이유며, 이는 앞서 제기한 의문에 일정한 단서를 제공한다. 양측 각 당사자 집단의 연대성으로 인해 집단책임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소송에서 한 기사(knight)의 조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자가 그에 대한 복수로 그 기사에게 상해를 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 조카의 행동은 그의 모든 친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대위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 시기의 기록들 중에는 특히 귀족가문들 간의 오랜 반목을 다룬 것들이 많다. 이들에게 보복은 위신과 명예심의 표현이었고, 보복은 일종의 '계급적 특권(class privilege)'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복에 의한 투쟁과 반목은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게 되었고, 적절한 규제가 요구되었다. 다만 친족들 간의 집단적 연대성에 비롯된 보복감정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으로 도덕법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계당국은 이를 근절시킬 수도 없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던 관계로 피의 보복을 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절차를 법제도화 함으로써 오히려 보복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프랑스 아르투아 지방 아크자치현장에는 고의적 살인과 관련해 영주에게는 살인자의 재산을, 그리고 피해자의 친족들에게는 그 집안사람 중 한명을 바치도록 – 친족들은 넘겨받은 자를 처형할 수 있었다 – 규정하고 있었다. 고소권은 거의 변함없이 피해자의 친족들에게만 주어져 있었고, 13세기까지도 플랜더스나 노르망디와 같이 당대에 가장 통

22) 이하의 내용은 Marc Bloch, *Feudal Society, vol.1 - The Growth of Ties of Dependence* (*Translated by L.A. Manyon,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pp.125-130*)을 요약한 것으로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1권」, 경인문화사, 2011, 57-59면에 소개된 내용을 본고의 논지전개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 축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치권 이 잘 확립된 도시와 공국에서 조차 살인자가 피해자의 친족들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군주나 법관도 그를 사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세사회도 이러한 보복관행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고, 죽은 자에 대한 보복을 그만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고대의 관습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위해 통상적으로 배상을 하게 되었다. “창끝을 느끼고 싶지 않으면 너의 가슴을 향하고 있는 창을 사버려라.”²³⁾라는 앵글로 색슨족의 속담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중세 이전의 바바리안 법들(past barbarian laws)²⁴⁾에는 각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 화해금의 일정액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바리안 법들은 매우 다른 처벌의 전통을 지닌 지방 관습에 의해 대체되면서 화해금을 규정한 근거법도 사라졌다. 그렇지만 화해금을 지불하는 관습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 관습은 중세 말엽까지 지속되었다. 그 때부터 화해금 액수는 개별 사안에서 합의, 중재, 그리고 판결 등을 통해 결정되었다.²⁵⁾ 피의 보복과 마찬가지로 화해금의 지불은 친족집단 전체와 관련되었다. 경미한 해를 끼친 경우 화해금은 피해자에게 주어졌고, 고의적 살인이나, 토막살인 등의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속죄금(weergild)을 수령했고, 가해자의 친족은 속죄금 지불에 기여했다. 단, 배상금의 지불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화해를 보증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죄하거나 복종을 하는 행동이 요구되었다. 적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개 경의를 표하는 복종의 제스처가 요구되었다. 이 경우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집단이었다.²⁶⁾ 모든 면에서 개인의 행동은 그 친족집단 전체에 연대적으로 연결되었던

23) “Buy off the spear aimed at your breast, if you do not wish to feel its points.”

24) 여기서 바바리안 법이란, A.D. 600~900 사이에 제정되었던 ‘앵글로 색슨법(Anglo-Saxon Law)’, ‘프리지아법(Lex Frisionum)’, ‘게르만법(Germanic Law)’, ‘살릭법(The Salic Law)’, 그리고 ‘서고트법(The Visigothic Code)’ 등을 일컫는다. 이들 법에는 계층에 따른 속죄금(weergild)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5) 블로흐는 화해금을 지불한 두 개의 극단적 사례로 1160년에 한 주교가 자신의 조카가 살해당한 데 대한 화해금으로 어느 귀족의 친족들로부터 교회(church)를 넘겨받은 예와, 1227년에 한 농부의 처가 남편의 살인자로부터 적은 액수의 돈을 화해금으로 받은 예를 들고 있다.

26) 예컨대 1208년 한 수도승의 집사는 자신이 상해를 입힌 한 영주의 집사에게 속죄의 경의를

것이다.

이상 살펴본 중세유럽 사회의 특징은 귀족 가문들 간, 친족집단 간의 집단 책임을 다룬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만일 살인이 한 가문 내에서 또는 친족집단 내에서 벌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취급되었을지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하 현대 원시부족의 사례로 미루어 짐작해 보고자 한다.²⁷⁾

3. 현대 원시부족 - 누어(Nuer) 족을 한 예로

아프리카 수단 남단의 나일강 기슭과 사바나 지역에 사는 누어족에게 피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범적 제재이며, 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주는 주요한 담보장치이다. 만일 피의 보복이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면, 부족 내에서 발생한 살인에 대한 한 공동체의 다른 공동체에 대한 보복은 해결의 가망이 없는 '부족 간 전쟁 상태' 가 될 수밖에 없다.

싸움 도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면 피의 보복이 개시된다. 살인이 발생하면, 살인자는 그가 훌리게 만든 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서둘러 표범가죽을 걸친 족장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초래한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소(sanctuary)를 찾게 된다. 살인자는 족장이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수송아지, 숫양 또는 숫염소를 그에게 제공한다. 사망자의 친족들이 그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곧 그들은 살인자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선다. 부계친족에게 있어서 보복은 가장 구속력 있는 의무이며, 모든 의무들의 전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살인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노

표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족 29명을 데리고 가야 했고, 1134년 한 부사제가 암살된 후 부사제의 친족들은 살인자들 중 한명과 그의 공범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물론 그의 친족들 까지 포함해 총 250명 모두로부터 속죄의 뜻으로서의 경의의 뜻을 받기 위해 회동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7) 단, 본고에서 현대 원시부족에 대한 연구는 전적으로 누어족에 대한 프리차드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결론의 타당성은 그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친족의 크나큰 수치가 된다. 족장은 신성한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바, 살인자가 족장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는 도피처를 갖게 되지만, 피해자의 친족은 수시로 그를 감시하며 만일 그가 성소를 벗어나게 되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²⁸⁾ 이런 상태가 수 주간 지속되고 난 후, 족장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처음에는 대개 이러한 협상을 거절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명예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절이 곧 사망의 대가로서 가해자 측이 제시한 배상금²⁹⁾을 받기 싫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을 잘 아는 족장은 협상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위협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족장의 설득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마침내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협상을 수용하게 될 때에는 그 이유가 사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서 배상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사자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해야 한다. 배상금으로는 40-50여 마리의 소가 필요했으며, 20여 마리를 양도했을 즈음에 속죄의식이 거행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살인자의 친족들은 보복으로 굽습을 당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³⁰⁾ 살인은 살인범하고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까운 남계 친족(close agnatic kinsmen)과도 관련이 있었다. 피해자의 친족들은 범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범인의 가까운 남계 친족들 중 임의로 선택해 죽일 수 있

28) 이 점은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보복을 면할 수 있었지만,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보복을 당할 수 있었고(신명기 19:10), 고의적(intentional) 살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살인자도 도피성을 벗어나는 순간 피의 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신명기 19:6). Pamela Barmash, "Homicide in Ancient Israel, the Ancient Near East, and Traditional Societies", p.50; Pamela Barmash, "Blood Feud and State Control", p.185면 참조.

29) 누어족은 배상의 방식으로 소를 이용한다.

30) 누어족의 보복관습은 중세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사적 보복 관습과 매우 유사하다. 중세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살인자는 일단 도피처나 성소를 찾아야 했으며, 그곳에서 1년을 보낸 후에야 살인자는 비로소 배상금을 협상할 수 있었다. 만일 화해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살인자는 2년을 더 도피처나 성소에서 보내야 했다. 이때의 배상금은 물질적 손해배상의 의미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의 의미도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Carl Ludwig von Bar, op.cit., pp.120-121.

는 권리도 갖고 있었다.³¹⁾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간 상호 적대감은 배상금이 완전히 지급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혈족들 간의 잠재적 적대감은 살인이 부족 단위의 집단에 속하는 자들 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속되었다. 그보다 작은 단위의 집단 간에서 발생한 살인은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었고, 해결된 후에는 재발할 가능성도 적었다. 예컨대 한 친족 내에서 누군가 자신의 친사촌을 살해한 경우, 20여 마리의 소만 제공하면 죽었고, 원한은 그 것으로 끝났으며, 곧 친족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는 가까운 이웃마을 사람들 간에 살인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 간에 발생한 살인은 배상금을 통해 해결되었고, 보복을 통해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일 피의 보복이 허용된다면 그들 간에 원한이 지속되었을 것이고 결국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생활은 원한상태와는 양립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살인사건이 피의 보복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양 당사자들의 구조적 상호관계에 의존해 있었다.³²⁾

4.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의 원형(prototype)과 집단책임의 여러 형상

이상 일별해 본 고대 근동지역과 중세유럽, 그리고 현대 원시부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적 보복관습은 기본적으로는 “받은 대로 되돌려 주는”, 즉 동해보복의 원리이다. 즉, 이는 상해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받은 만큼 가해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하고, 살인, 특히 고의적 살인의 경우라면 가해자를 사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적 요소 이외에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면서도 때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도피성이나 성소 제도도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가해자 측의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관습이다.

우선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중세유럽, 그리고 누어 족의 예처럼 살인자를 반

31) 따라서 그들은 살인범 母의 형제의 자손이나, 부의 자매, 그리고 모의 자매는 죽일 수 없었다.

32) 이상의 내용은 E.E. Evans-Prichard, *The Nuer: A Description of Their Modes of Livelihood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a Nilotic People*, Oxford: Clarendon Press, 1968, pp.150-158을 요약한 것으로 안성조, 앞의 책, 66-99면에 소개된 내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축약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드시 죽이는 대신 배상금(속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체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피해자 친족에게 있었다. 살인의 경우, 이는 비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만 취급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속한 (친족)집단과 피해자의 친족집단 간의 집단적 책임 (collective responsibility)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또 중세 유럽의 사례를 보면 한 기사의 조카에게 공격을 받았던 자가 그에 대한 복수로 그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책임귀속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가해자 집단의 연대성과 피해자 집단의 연대성이 모두 똑같이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또 그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배후에는 집단적 위신과 명예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누어족의 경우 피해자의 친족들은 범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범인의 가까운 남계 친족들 중 임의로 선택해 죽일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다.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수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였다. 누어족에게도 살인자의 목숨을 대신해 배상금을 받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친족의 명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한편 누어족의 경우에 특이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살인자에 대한 피의 보복이 부족 간 살인사건에서만 허용되고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 간에 발생한 살인은, 배상금을 통해서만 해결되고, 피의 보복을 통해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상 정리한 내용은 동서고금의 사적 보복관습과 집단책임의 관습을 지탱해 온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응도와 상관관계를 다루며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I. 진화윤리학과 도덕적응설

1. 진화윤리학의 기본전제와 주요이론

찰스 다윈 아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원리는 모든 학문영역을 뚫고 침투해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유전된 변이들의 차등

적 생식 성공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된다.³³⁾ 한 마디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더 나은 변이가 선택되어 진화한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선택환경에 더 적합한(fitter) 신체적, 행동적 특질을 지닌 개체가 높은 적응도(fitness)³⁴⁾를 지니게 되어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진화심리학은 여기에 더해 환경에 더 적합한 ‘심리적 특질’을 가진 개체가 선택되고 개체군 내에 그러한 유전자가 퍼져 그 심리적 특질이 진화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이론이다. 즉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은 진화사를 통해 생존이나 생식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해 주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심리적 특질로는 ‘뱀과 거미 등 위험한 생물이나 포식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가진 배우자에 대한 선호’, ‘속임수에 대한 민감성과 사기꾼 탐지능력 및 응징욕구’, ‘노래와 웃음에 대한 선호’, ‘언어능력’ 등이 있다.³⁵⁾

진화윤리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다른 심리적 특질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적 성향 역시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본다. 한 마디로 말해 ‘도덕’도 ‘적응’이라는 것이다. 개체의 적응도(fitness)를 높여주는 형질이 자연선택되어 진화한다는 진화론의 기본 논리를 도덕성에까지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일견 부당해 보인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될 것이다. 도덕에 대한 기준의 사고방식, 즉 ‘선의 이데아’나 ‘황금률’ 또는 ‘실천이성’에 의한 합리적 추론’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선택에 의한 ‘자동적 반응’으로서 도덕감정이나 도덕판단을 논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존재론과 목적론 없는 윤리학이라는 것이다.³⁶⁾ 다음으로 ‘포식자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성향이 선택되어 진화했다는 점은 개체의 적응도를 높여줄 수 있는 성향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수긍할 수 있으나, 도덕성을 구성하는 대다수 내용은 개체

33) 데이비드 버스/이충호 역, 「진화심리학」, 용진 지식하우스, 2012, 72면.

34) 적응도란 개체의 번식 잠재력(번식 가능성)을 말한다.

35) 케빈 웰런드 · 길리언 브라운/양병찬 역, 「센스 앤 넌센스」, 동아시아, 2014, 212면 이하 참조.

36) 이러한 평가로는 오재호, “협동의 진화로서의 도덕”, 「철학연구」제121집, 대한철학회, 2012, 53면 이하 참조.

의 적응도를 높이는 '이기적' 특질이나 성향과는 반대로 '이타성'을 특징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³⁷⁾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이미 '이타성'을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을 구축해 두고 있다. 먼저 '포괄적응도(inclusive fitness)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혼신적 행동이나 형제자매나 조카에 대한 돌봄과 같이 고전적 적응도(classical fitness)³⁸⁾ 개념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윌리엄 해밀턴이 제안한 이론이다. 포괄적 적응도란 어떤 개체나 생물의 성질이라기보다는 그 행동이나 효과의 성질이다. 따라서 포괄적응도는 어떤 개체가 지난 번식 성공률(개별적 적응도)에다가 그 개체의 행동이 혈족(유전적 친족)의 번식성공률에 미치는 효과를 더한 것이다. 한 마디로 유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온갖 간접적 방식을 다 함께 고려한 개념이다. 생물은 형제자매나 조카, 조카딸이 살아남아 생식을 할 수 있도록 돋는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유전자가 복제되는 것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나의 형제자매나 혈족은 나의 유전자를 어느 정도 공유할 확률이 있고, 또 그들이 낳는 자식도 내 자식만큼은 아니지만 나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돋는 이타적 성향은 결국 나의 유전자를 전파하는데 기여하므로 나의 포괄적 응도를 높이는 행위가 된다.³⁹⁾

포괄적응도 이론은 '유전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가령 내가 유전자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나를 최대한 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물어볼 때, 첫째, 내가 들어 있는 (유전자의) '운반수단(vehicle)⁴⁰⁾' 즉 신체의 안녕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생존). 둘째, 그 운

37) 본고에서는 진화 윤리학의 규범학으로서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진화 윤리학은 존재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윤리학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며 또 하나의 계몽"이라는 평은 참고해 둘 만하다. 오재호, 앞의 논문, 56면 참조.

38) 어떤 개체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직접적인 생식적 성공을 자손의 생산으로 통해 측정하는 것.

39) 해밀턴에 의하면 유전자형의 포괄적응도가 평균보다 높으면 그 유전자형은 선택될 것이고 낮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W. D. Hamilton,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I", *J. Theoret. Biol.* 7 (1964), p.14. "In other words the kind of selection may be considered determined by whether the inclusive fitness of a genotype is above or below average."

40)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낸 운반수단

반수단이 생식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번식). 셋째, 나의 복제본을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운반수단이 생존과 번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처럼 포괄적응도 이론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혈족을 도움으로써(자신이 희생함으로써) 포괄적응도가 높아진다면, 이타성은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희생의 수혜자가 결국 유전적 친족이기 때문이다. 다만 포괄적응도 면에서 친척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자신이 치르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이타성은 진화할 수 있다.⁴¹⁾

그런데 포괄적응도 이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이타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유전적 근연이 없는 자들 간의 상호 이타적 행위를 진화론이론에 의해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이타적 행위야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성을 이루는 주된 내용물이다. 감사, 우정, 연민, 신뢰, 의분, 죄의식, 복수심 등이 모두 상호적 이타성에서 기인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공격성, 즉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보면 부당함을 느껴 심란해지는 성향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더 나아가 도덕감정뿐 아니라 정의개념이나 법 체계의 기원까지도 상호적 이타성의 진화와 연결된다고 한다.⁴²⁾

2. 텁포텟(Tit For Tat) 전략과 상호이타성의 진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로버트 트리버스 등에 의해 정교한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해밀턴의 포괄적응도 이론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비친족 간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호적 이타성 이론은, 그러한 편의 전달의 수혜자가 장래에 보답을 하게만 한다면, 비친족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심리기제가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친구 사이인⁴³⁾ 두 사냥꾼

(vehicle), 즉 일종의 생존 기계(survival machine)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알 칠려져 있듯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주장한 것이다.

41) 테이비드 버스/이충호 역, 앞의 책, 47면.

42) 수전 블랙모어/김명남 역, 「밈」, 바다출판사, 2010, 280-281면.

이 있는데 이들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일정치 않아 일주일에 둘 중 한 사람만이 사냥에 성공한다고 할 때, 만약 첫 번째 사냥감을 갑이 친구인 을과 나누면 나눠준 고기만큼의 희생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비교적 적을 수 있는데, 고기가 썩기 전에 자신과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가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을에게는 매우 큰 편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주는 상황이 역전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두 사냥꾼은 아주 적은 비용만 치르면서 친구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즉 두 친구는 각자 이기적으로 고기를 독차지할 때보다 상호적 이타성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소위 ‘거래를 통한 이득’이라 부른다. 중요한 점은 이 ‘거래를 통한 이득’은 사람들에게 상호적 이타성이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호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생존과 번식면에서 더 유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상호이타성이란 심리기제가 퍼져나간다. 상호적 이타성은 ‘상호이익을 위해 둘 이상의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협력’으로 정의된다.⁴⁴⁾

그런데 상호적 이타주의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적응문제는 사기꾼, 즉 자기 편익만 챙기고 나중에 보답하지 않는 자의 위협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상호적 이타주의자인 척 가장했다가 편익만 챙기고 장래에 상응한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속임수 문제라고 한다. 이 문제의 한 가지 해결책은 로버트 액설로드와 해밀턴이 입증한 만큼 되돌려주기(Tit For Tat) 전략이다. 티포텟 전략이란 처음에는 협력하는 행동을 보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상대가 하는 대로, 즉 상대가 협력하면 계속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보복(즉 배신)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해결책은 소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각자는 협력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상호적 이타성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

43) 여기서 친구사이를 상정하는 것은 그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란 것을 의미한다. 후술하듯 일회성 죄수딜레마게임에 있어서는 배반이 정답이다.

44) 사냥꾼 사례의 소개와 그 진화심리학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는 데이비드 버스/이충호 역, 앞의 책, 420면.

만 실제로 각자는 상호 교환 없이 상대방의 이타성이 주는 이익만 챙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만약 이 게임을 단 한 번만 한다면 유일하게 분별 있는 행동은 ‘배신’이다. 그러나 액설로드와 해밀턴은 이 게임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협력의 열쇠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승리하는 전략은 결국 ‘받은 만큼 되돌려주기(Tit for Tat)’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컴퓨터 시합을 개최함으로써 이 전략을 발견했다. 전 세계의 경제학자, 수학자, 과학자, 컴퓨터 천재 등에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200번 반복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승자는 죄수의 딜레마 매트릭스에서 얻은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총 14 개의 전략프로그램이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수학, 사회학 다섯 분야에서 제출되었다.⁴⁵⁾ 이 대회의 우승자는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이자 게임이론가인 아나톨 라포포트 교수가 제출한 티포탯 프로그램이었다.⁴⁶⁾

티포탯은 매우 단순한 전략이었다. 처음에는 협력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상대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전략이다. 상대가 협력하면 둘 다 계속해서 협력하여 둘 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 상대가 배신하면, 티포탯은 보복한다. 그래서 배신자를 상대하더라도 크게 잊지 않는다. 제2회 토너먼트에서는 60여종의 프로그램이 티포탯과 겨루었지만 모두 패배했다. 이후에 연구자들은 더 많은 행위자로 더 복잡한 상황을 고안해 보았고, 이것을 진화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티포탯은 배신전략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게임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결국 널리 퍼져 개체군을 장악했다. 이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evolutionary stable strategy, ESS)’⁴⁷⁾이었던 것이다. 티포탯

45) 액설로드는 여기에다 랜덤(random)이라는 15번째 전략을 추가했다. 이는 협력과 배신의 카드를 아무렇게나 내는 것으로 일종의 ‘무전략’ 전략이다. 만일 어떤 전략이 랜덤보다 이득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상당히 나쁜 전략이 된다.

46) 로버트 액설로드/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9, 54-55면 참조.

47)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란, 개체군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일단 그 전략을 채택하면 다른 대체전략이 그 전략을 능가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정의된다. 예컨대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겐 ESS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종끼리 잡아먹는 전략은 다른 전략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서 불안정하고 보복의 위험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죽어오면 영양은 죽기는 전략을 취하며, 이 때 사자에 때때로 맞서는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 아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티포탯 전략이 엄밀히 말하면 진짜 ESS는 아니라고 한다. 티포탯은 자신과 비슷한 상호이타적(협력적) 전략을 구사하는 다른

전략의 합의는 다음과 같다. 일회성 게임에서는 결코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은 일회성 게임이 아니다. 우리는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고, 그들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죄수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길은 반복에 있다. 죄수의 딜레마를 거듭 겪으면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짐작하게 되고, 따라서 협동을 통해 이득을 나눌 수 있다. 특히 이전에 서로 만나지 못했던 사이라면 서로를 따라 할 때가 많다. 협력자에게는 협력하고, 배신자에게는 배신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배신만 하는 사람은 누구나 꺼리는 상대가 되므로, 그는 남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점점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에 걸쳐 상호적 이타성이 진화하게 된 원리인 것이다.

인간의 상호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이렇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처음에 어떤 착한 행동이 하나 등장해서 그 과정을 개시해야 한다. 로버트 트리버스는 바로 친족 선택, 즉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이 그 시작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친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행동으로 옮긴 동물이라면 그것을 쉽게 일반화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텁포랫이 시작될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리라는 것이다.⁴⁸⁾ 텁포랫 원리는 도덕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 준다. 우리는 응당 배신자를 처벌해야 마땅하고, 또 배신자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신뢰도가 중요한 이러한 게임에서는 최대한 협동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유리한데, 그래야 추후에 보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액설로드에 의하면 굳건한 도덕규범은 단지 규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규범'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사회는 해당 규범을 위반한 자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자를 비난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자들도 비난한다는 것이다.⁴⁹⁾

전략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텁포랫이 진짜 ESS는 아니지만 텁포랫과 유사한 전략들의 혼합 전략이 ESS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리처드 도킨스/홍영남·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0, 158-159면과 357면 참조.

48) 액설로드도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유전적 친족이론은 올디의 평형(개체군이 무조건 배신만 하는 전략으로 가득찬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로버트 액설로드/이경식 역, 앞의 책, 123면 이하 참조.

요컨대 친절과 협동은 물론, 상호적 이타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도덕감정의 많은 부분은 결국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돋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 진화 심리학과 진화윤리학의 기본전제인 것이다.

3. 도덕적응설과 포괄적응도

이상의 논의부터 도덕도 생물학적 적응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화해 왔다는 점에서 ‘도덕적응설(moral adaptivism)’이라는 가설이 성립가능하다.⁵⁰⁾ 도덕적응설은 도덕규칙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진화윤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도덕적응설의 요체는 도덕적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높이고 비도덕적 행동은 포괄적응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신체와 사회적 지위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므로 개체의 개별적응도는 물론 포괄적응도를 높인다. 또한 자신의 유전적 혈족에 대한 이타적 성격도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특성들이다. 마찬가지로 비혈족을 위한 희생과 이타적 행동 역시 결과적으로는 생존해 있는 동안에 개체의 편의를 높여 적응도를 높여주므로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특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응도는 환경에 유리한 신체적, 심리적 특질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향이 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살인, 강간, 절도 등은 왜 비도덕적인가? 도덕적응설에 따르면 이는 행위자의 포괄적응도를 낮추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텃포랫 원칙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간, 절도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혹은 공동체로부터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생존과 번식의 확률이 낮아짐을 뜻한다. 그리고 살인과 강간, 강도 등을 저지른 범법자를(햇포랫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배신자)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적절한 처벌은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효과로 인해 사기꾼이나 반역자에 의

49) Robert Axelrod, “Laws of Life”, 27 *The Sciences* 44 (1987), pp.44-51.

50) 이러한 가설의 소개로는 박승배, “도덕적 행위, 포괄적응도, 진화범죄학”, 「동서철학연구」 제67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161면.

한 집단 전체의 붕괴를 막음으로써⁵¹⁾ 구성원들이, 또 결과적으로 자신과 유전적 혈족이 생존하고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덕적응설은 도덕적 진리(moral truth)가 있으며 도덕진술은 도덕사실(moral fact)에 대응할 때 진리라고 제안한다. 예컨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도덕진술은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진리이다. 즉 규범진술이 사실진술로 번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진술은 살인은 포괄적응도를 떨어트린다는 사실진술로 번역될 수 있고, 자연주의 전통 하에 서 있다.⁵²⁾

IV.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본 집단책임관습

이제 진화윤리학과 도덕적응설의 입장을 통해 집단책임 관습을 조명해 볼 단계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에는 포괄적응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책임 관습이 생성되었다는 점을 입론해 보고자 한다.

1. 사적 보복관습과 포괄적응도의 문제

원형적 형태의 사적 보복관습에는 포괄적응도 측면에서 볼 때 한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도덕적응설에 따르면 사적 보복관습도 오랜 진화사를 거쳐 생성된 하나의 도덕적 진화의 산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사적 보복이

- 51)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개체들로 구성된 종 내지 종내 개체군 같은 집단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다른 경쟁자 집단보다 절멸의 위협이 적다”는 집단 선택설에 반대하는 리처드 도킨스는 개체 선택론자도 이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서는 리처드 도킨스/홍영남·이상임 역, 앞의 책, 48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집단선택설에 대한 유력한 반증은 바로 이기적 반역자의 존재 가능성이다. 도킨스는 스스로 개체선택론을 ‘유전자 선택설(Theory of gene selection)’로 지칭하기를 선호한다고 밝힌다.
- 52) 도덕적응설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으로는 박승배, 앞의 논문, 163면. 본고에서는 도덕적응설의 입장은 다른 규범윤리학 이론들과 공정하게 비교·검토하는 작업은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란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탄생할 즈음의 원시사회를 상정해 보자.⁵³⁾ 이 시절 살인자는 대체로 성인남성이었을 것이고, 성인남성은 당시 사회에서 수렵채집은 물론 농경과 부족 간 전쟁 등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살인자를 반드시 죽게 하는 규범은, 특히 내집단(in-group)의 경우에 있어서 집단의 식량확보능력과 외집단의 침입으로부터의 방어능력 및 기타 필요한 노동력 등을 경감시켜 오히려 집단 내 구성원들의 포괄적응도의 약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⁵⁴⁾ 특히 보복감정이 살인자의 친족에게까지 미쳐서 살인자의 친족까지 죽이는 사례도(또 누어족처럼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⁵⁵⁾ 누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집단생활은 원한 상태와는 양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비록 살인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한 자유형을 부과하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응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적 보복관습이 오래도록 정착되고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일까?

2. 집단책임의 인정과 포괄적응도의 향상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은 바로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책임이란 법형상은 대체로 사적 보복관습과 함께 나타난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한 범죄에 있어서 집단책임의 인정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집단적 책임(collective

53) 진화심리학자들은 도덕성을 비롯한 인간의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 EPM)이 형성된 시기를 대략 170만년 전부터 1만년 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이 초기 과거의 선택환경은 '진화적 적응환경(EEA: environment of evolutionary adaptedness)'이라고 칭하며, 일반적으로 EEA라 하면 석기시대 수렵채집인 조상들이 생활했던 플라이스토세 환경을 말한다.

54) 개체든 유전자든 집단생활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임은 틀림없다. Richard D. Alexander, "The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Annu. Rev. Ecol. Syst.* 5 (1974), pp.329-330.

55) “보복을 당하는 집단의 연대성(passive solidarity)도 보복을 가하는 집단의 연대성(active solidarity)에 필적할 만큼 똑같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살인자의 본인의 죽음 이외에 또 한 명의 그의 혈족 구성원의 죽음까지 요구되기도 하였[던]” 중세 유럽의 사례를 상기하라. 이러한 사례는 누어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responsibility)은 어째서 사적 보복관습과 함께 등장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적 보복관습이 포괄적응도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상해든 살인이든 피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낮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피의 보복은 가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낮춘다. 이는 앞서 검토한 도덕적응설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기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면 포괄적응도 문제가 양측에 각각 피해자가 살해당한 만큼 또한 가해자가 보복당한 만큼 똑같이 발생하겠지만 그들이 모두 내집단에 속할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두 배나 심각한 포괄적응도의 위협이 발생한다. 고대 원시 사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만일 국가에 의한 공형별권의 공정한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각 개별 당사자의 개별적 적응도의 문제로 처리되면 그것으로 사태는 종결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개별적 적응도가 상실된 것에 대한 대가만큼 가해자를 처벌하여 그의 개별적 적응도를 감소시키면 분쟁은 종식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응설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는 단순히 개별적 적응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유전적 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응도의 증감문제를 초래한다. 도덕성과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행위, 즉 범죄도 포괄적응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중세 유럽사회처럼 국가의 공형별권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 보복은 관습의 형태로 여전히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음을 상기해 보면 범죄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친족의 적응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므로 이들 간 보복 감정(Vendetta)은 끝없는 악순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은 내집단에서는 물론 내집단과 외집단 간에도 그 자체로 포괄적응도에 또다시 커다란 위협이 된다.

자연선택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사적 보복관습에 적응적 결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선택압이 가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별적 적응도 수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각자의 친족들의 포괄적응도의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다시 말해 집단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적응적 이득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명백한 포괄적응적 이점이 있다.

첫째, 피해자의 친족 중 누군가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억지력의 제고를 가져온다. 설령 피해자는 육체적, 사회경제적으로 유약해 살인의 표적이 되기 쉬운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친족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범죄억지력을 지닌다. 범죄를 억지한다는 것은 내집단의 경우 가해자든 피해자든 양측 모두에게 포괄적응도의 향상을 가져온다.

둘째, 배상금(속죄금)을 가해자 개인이 아닌 그의 친족들에게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금전적 배상의 실효성을 높인다. 설령 가해자를 처형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그 속죄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가 속한 친족(집단)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인 수령이 가능하다. 적응도란 개체의 번식 잠재력(번식 가능성)을 말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 역시 물질적 측면에서 피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분명하다.

셋째, 외집단 가해자를 죽이지 못할 경우 그 친족을 죽임으로써 잠재적인 경쟁집단(외집단)의 포괄적응도를 낮추어 반사적으로 내집단의 포괄적응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살인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찾아내 처형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친족 구성원을 죽이는 행위는 가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적어도 유전적 적응도의 측면에서는 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온다. 다만, 이 경우 만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내집단에 속할 경우에는 가해자측 친족을 살해한다면 내집단의 포괄적응도가 두 배로 떨어질 위협이 있다. 그러나 누어족의 사례처럼 내집단의 구성원 간 또는 친족 간 살인행위에 있어서는 대체로 피의 보복이 아닌 속죄금으로 해결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피의 보복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결과를 예측해 주는 것이 도덕적응설의 입장이며 귀결이다.

넷째, 서두에서 살펴본 집단책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사적 보복은 사자와 친족집단의 위신과 명예심의 발로에서 표출된 것이었다. 그런데 위신과 명예심은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고 따라서 충분히 보복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⁵⁶⁾ 그렇다면

피해자측의 위신과 명예는 포괄적응도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추된 위신과 명예, 즉 떨어진 포괄적응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측에 보복을 하거나 속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집단책임은 포괄적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적 보복의 당사자 간에 집단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적응적 이점이 사적 보복관습의 문제점을 보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V. 맷음말

집단책임 관습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불합리하다. 피고인에게 중대한 법의의 침해를 가져오는 형사책임을 집단의 연대성에 기초해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무고한 시민이 다른 사람의 범죄로 함께 처벌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감정에 반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공정한 법집행기관, 즉 국가에 의한 공형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시절에 사적 보복이 허용되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집단책임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 간의 개별적 적응도의 관점에서만 바로보지 않고,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측 친족과 피해자측 친족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포괄적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측에 집단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측도 집단적으로 죄를 추궁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즉, 집단책임을 인정할 경우 범죄역지력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고, 물질적으로든 위신과 명예의 여러 측면에서 피해자측의 포괄적응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며, 유전적 적응도 측면에서는 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6)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데이비드 버스/이충호 역, 앞의 책, 479면 이하 참조.

이렇게 도덕적응설의 입장에서 집단책임 관습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틀을 마련해 봄으로써, 단지 문헌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대사회의 법문화에 내재한 합리적 이성을 추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박승배, “도덕적 행위, 포괄적응도, 진화범죄학”, 「동서철학연구」 제67호, 한국 동서철학회, 2013. 3, 160-173면.
-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1권 (경인문화사, 2011)
- 오재호, “협동의 진화로서의 도덕”, 「철학연구」 제121집, 대한철학회, 2012. 2, 52-70면.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9)

Richard D. Alexander, The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Annu. Rev. Ecol. Syst. 5 (1974)

Robert Axelrod, Laws of Life, 27 The Sciences 44 (1987)

Carl Ludwig von Bar, A History of Continental Criminal Law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16, Translated by Thomas S. Bell)

Pamela Barmash, Blood Feud and State Control: Differing Legal Institutions for the Remedy of Homicide during the Second and First Millennia B.C.E., 63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83 (2004)

Pamela Barmash, Homicide in Ancient Israel, the Ancient Near East, and Traditional Societies, A Doctoral Dissertation at the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1999)

Pamela Barmash, Homicide in the Biblical World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Marc Bloch, Feudal Society, vol.1 - The Growth of Ties of Dependence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70, Translated by L.A.

- Manyon)
- W. Den Boer, Private Morality in Greece and Rome: Some Historical Aspects (Brill Archive, 1979)
- George P. Fletcher, Romantics at War: Glory and Guilt in the Age of Terrorism, (Princeton Univ. Press, 2002)
- L. Cosmides & J. Tooby, From Evolution to Behaviour: evolutionary psychology as the missing link, in: J. Dupre(Ed.), The Latest on the Best: Essays on Evolution and Optimality (Cambridge, MA: MIT Press, 1987)
- G.R. Driver & John C. Miles, The Assyrian Laws (Oxford: Clarendon Press, 1935)
- G.R. Driver & John C. Miles, The Babylonian Laws Vol. I—Legal Commentary –, (Oxford: Clarendon Press, 1956)
- G.R. Driver & John C. Miles, The Babylonian Laws Vol. II—Text Transl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55)
- C. Edwards, The World's Earliest Laws (London: Watts & Co., 1934)
- W. D. Hamilton,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I, J. Theoret. Biol. 7 (1964)
- Thorkild Jakobson, An Ancient Mesopotamian Trial for Homicide, in: William L. Moran (ed.), Toward the Image of Tammuz and Other Essays on Mesopotamian History and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C.H.W. Johns, Babylonian and Assyrian Laws, Contracts and Letters, Union (New Jersey: The Lawbook Exchange, 1999, Originally published: Edinburgh : T.&T. Clark, 1904)
- W. Preiser, Zur Rechtliche Natur der altorientalischen Gesetz, in: P. Bockelmann et al. (hrsg.), Festschrift für Karl Engisch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69)
- E.E. Evans-Prichard, The Nuer: A Description of Their Modes of Livelihood

-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a Nilotc People (Oxford: Clarendon Press, 1968, Originally published 1940)
- Martha T. Roth, Gender and Law: A Case Study from Ancient Mesopotamia, in: Victor H. Matthews, Bernard M. Levinson, & Tikva Frymer-Kensky (eds.), *Gender and Law in the Hebrew Bible and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8)
- Martha T. Roth, Homicide in the Neo-Assyrian Period, in: F. Rochberg-Halton, (ed.), *Language, Literature, and History: Phil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Presented to Erica Reiner*, American Oriental Series 67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87)
- Martha T. Roth,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2nd ed.,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7)
- Martha T. Roth,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The Laws of Hammurabi, 71 Chi.-Kent L. Rev. 13 (1995)
- Raymond Westbrook, Studies in Biblical and Cuneiform Law, in: Chiers de la Revue Biblique 26 (Paris: J. Gabalda, 1988)
- Raymond Westbrook, The Character of Ancient Near Eastern Law, in: A History of Ancient Near Eastern Law, Vol.I (Leiden: Boston: Brill, 2003)
- Raymond Westbrook, What is the Covenant Code?, in: Bernard M. Levinson (ed.), *Theory and Method in Biblical and Cuneiform Law*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데이비드 버스/이충호 역, 진화심리학 (웅진 지식하우스, 2012)
- Leonard D. Katz/김성동 역, 윤리의 진화론적 기원 (철학과 현실사, 2007)
- 로버트 라이트/박영준 역, 도덕적 동물(The Moral Animal) (사이언스북스, 2003)
- 로버트 액설로드/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9)
- 리처드 도킨스/홍영남이상임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0)

- 수전 블랙모어/김명남 역, 밍 (바다출판사, 2010)
움베르또 마뚜라·나프란시스코 바렐라/최호영 역, 앎의 나무 - 인간 인지능
력의 생물학적 뿌리 - (갈무리, 2007)
앨런 S.밀러·가나자와 사토시/박완신 역, 진화심리학(원제: Why Beautiful
People Have More Daughters) (웅진 지식하우스, 2008)
케빈 렐런드·길리언 브라운/양병찬 역, 센스 앤 네센스 (동아시아, 2014)
프란츠 부케티츠/김영철 역, 사회생물학 논쟁 (사이언스 북스, 1999)

[Abstract]

A Study on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 From the View of Moral Adaptation -

Ahn, Seong-Jo

Ph.D. in Law, Professor at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is thesis review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as a result of moral adaptation. To study morality is not just a work of philosophical ethics any more. It has become a common work of natural science including biology, neuroscience and (evolutionary) psychology. Moral emotion and intuition that had been prejudged as unknowable in ethics for a long time have become a new scientific subjects.

Evolutionary ethics, as a part of evolutionary psychology claims that moral rules have evolved by natural selection because it was advantageous for the survival and reproduction of our ancestors. This means, it argues that human morality is a kind of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EPM). Moral adaptivism is an area of Evolutionary ethics. According to moral

adaptivism, a moral act increases inclusive fitness, and an immoral act decreases inclusive fitness. Inclusive fitness theory developed by William Hamilton supports moral adaptivism. This theory imply that the view of gene's eye is very useful to understand moral act scientifically by the lens of evolutionary theory. Richard Dawkins also defended this kind of evolutionary view in his world-famous book 'The Selfish Gene'

This thesis concludes that blood feud custom had been created as a result of moral adaptation and evolved into such kind of form by natural selection as needed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in order to evade the danger of decreasing inclusive fitness, because prototype of blood feud custom had the possibility of decreasing inclusive fitness for both parties of a crime. For example, according to prototype of blood feud custom, a killer should be killed by one of the victim's close agnatic kinsmen in general. In most murder cases, a killer is an adult male, who is usually a very important resource for gaining foods, battle against enemies in the primitive society. So if a killer murders a man and the killer is avenged by the victim's kin, both parties' inclusive fitness necessarily will decrease.

Key words : collective responsibility custom, blood feud custom, evolutionary psychology,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 morality, moral adaptivism